탄원서

사건번호	2026도17654
피고인	윤석열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수신	대법원 제3부 귀중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종적인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바라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불리한 증거를 외면하거나 법원이 실제로 하지 않은 판단을 지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누구에 대한 지지나 반감이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7일 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같은 해 11월 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2012년 통화 및 문자자료, 오래된 교류와 만남의 정황 등을 근거로 각 발언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하고, 선거인의 판단자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저는 두 법원이 이미 상당한 심리를 거쳤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4일 항소심 선고에서 확인한 것은 판결 이유의 구술 설명입니다. 서면 판결문과 증인신문조서, 향후 제출될 상고이유서를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이미 존재한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쟁점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 오류가 실제로 있다면 그 범위에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상고심에서 심사해야 할 법률적 쟁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중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증인을 다시 믿어 달라거나 형량이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은 것은 두 발언에 관해 원심이 확정한 객관적 의미와 공표된 사실, 인정된 실제 행위,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서로 일치하는 기준 위에서 판단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발언이 모두 대통령선거 중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만으로 각 구성요건의 증명이 서로 대신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쉽게 다시 바꾸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 이유와 소송기록을 살펴 실제로 법령 위반이나 법률적 판단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탁은 원심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심이 제시한 논거가 구체적인 만큼, 마지막 법률적 점검도 그 논거 자체를 정확히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이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갖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각 발언의 객관적 의미와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 법률이 요구하는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0년 7월 16일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 후보의 질문과 즉흥적인 공방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후보자 토론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항소심은 2021년 관훈클럽 행사가 피고인만 초청한 언론인 질의응답이고, 2022년 현장 인터뷰 역시 언론인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의 특별한 법리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황을 후보자 상호 토론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및 일반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 인상을 종합하여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한 사건이므로, 답변이 다의적이기만 하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항소심이 이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한 이유 역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구별된 토론회 법리를 형식만 바꾸어 다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도4697 판결에 따라 발언의 전체 의미를 확정할 때에도, 실제 질문이 무엇이고 답변이 그 질문의 어느 범위에 대응했는지를 정확히 살피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체 문맥을 살핀다는 이유로 답변에 없는 의미를 더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일부 단어만 분리하여 유권자에게 전달된 핵심 인상을 없애서도 안 됩니다. 이 양쪽의 한계가 원심의 판단에서 법률상 일관되게 지켜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과 원심 판단

첫 번째 공소사실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피고인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입니다. 당시 발언에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해명뿐 아니라 그러한 소개를 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의 표현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이를 단순한 정식 선임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의 변호사 소개 행위까지 부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항소심의 이러한 해석은 사건의 쟁점이 애초에 수사 관련자의 변호사 접촉을 주선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윤 전 서장을 여러 차례 만난 경위,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부탁한 경위, 이후 다른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2012년 7월 10일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등장하며, 당시 통화·연락 기록이 그 시간적 흐름을 뒷받침한다는 판단이 선고 과정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특히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락이나 접촉의 중개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 시절 발언이 사실상 모든 소개 행위를 부인한 것이었다면, 연락 중개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도 그 발언의 핵심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해 제가 바라는 심사는 단지 “소개”라는 단어에 좁은 뜻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했다고 인정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 인정된 행위와 2021년 발언이 객관적으로 부인한 행위가 같은 것인지, 그 판단이 일반 선거인에게 전달된 의미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면판결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이남석 변호사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증언

이남석 변호사는 2026년 4월 27일 제1심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은 같은 해 9월 29일 항소심에서 각각 증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을 연결한 사람이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윤대진 전 검사장도 자신이 형에게 법률 조언을 받을 변호사를 연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증언의 심급과 내용은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모두 항소심 증언이라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증언은 최초 연결을 누가 부탁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후 연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이름이 문자에 등장한다는 사실 역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경위나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한 증언 전체를 자동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최초 소개와 후속 연락의 관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구별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은 2012년 통화에서 피고인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다른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관여를 언급하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에 비추어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소개한 것처럼 거짓 설명을 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 논거가 이미 제시되었다는 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지 두 증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평가의 위법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술 선고에서 증언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서면 판결문에서도 판단을 누락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증인신문조서와 항소심 판결문을 실제로 대조한 결과 중요한 증언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인정된 행위와 발언의 의미를 연결하는 법률적 판단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모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신중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의 문맥과 교류 사실

두 번째 공소사실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피고인이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배우자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부분입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의 일부에는 무속인 의혹과 배우자의 동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연이어 나오고, 피고인이 보도된 특정 인물을 언급한 뒤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장면이 확인됩니다.

항소심은 그 문답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배우자를 통해 형성된 이전의 친분관계까지 부인하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유로 질문 이전에 관련 보도가 있었던 사정, 기자들이 실제로 확인하려던 대상, 피고인이 해당 보도를 알고 답한 맥락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특정 행사장 또는 특정 날의 만남 여부가 기자들의 주된 질문 대상이 아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전체 문맥과 질문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답변이 짧았거나 즉흥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방을 무속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특정 인물을 실제로 만났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인식의 차이만으로 허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발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일과 그 의미의 허위성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속마음만으로 이미 표현된 말의 객관적 의미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객관적 의미가 확정된 다음에는 피고인이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사실을 부인했다고 인식했는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판단에 서로 다른 질문의 범위나 시간적 전제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과거 교류 사실과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

공개된 항소심 선고 설명에는 피고인이 2013년 무렵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 씨와 알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함께 여러 차례 만났으며, 일부 교류 사실은 변호인도 다투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이처럼 직접 경험한 만남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그 경위를 알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확인 소홀보다 훨씬 구체적인 고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저는 이 사정을 숨기거나 가볍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2024도4824 판결은 공표한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없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선거 홍보물의 통계 기준 누락에 관한 것이어서, 자신의 만남과 연락을 직접 경험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위 판례가 곧바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허위성과 허위성 인식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라는 원칙만큼은 이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원심이 확정한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피고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 사실이 무엇인지가 일치하는지, 두 단계의 법률적 판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사건기록에 따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공소사실별 당선 목적과 형사책임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명한 사정은 당선 목적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발언은 후보자의 공직수행의 공정성, 배우자와 비공식 인물 사이의 관계 등 선거인의 후보자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므로 그 중요성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가 각 발언 하나 때문에 달라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당선 목적은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요건입니다. 첫 번째 발언의 소개 여부를 인정한 증거가 두 번째 발언의 과거 교류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발언이 어떤 의혹을 해명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지, 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이 어떠한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는지를 각각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피고인의 다른 재판, 사회적 비판의 크기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법률적 구성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그러한 후속 효과만을 이유로 양형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재정적 파급효과를 근거로 특별한 관용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건 자체의 법률과 증거에 따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8. 탄원에 이르게 된 이유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이 법원의 판단에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국민이 판단할 자료를 왜곡했다면 법에 따라 책임져야 합니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 그 말의 객관적 의미와 법률상 요건을 끝까지 엄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남은 것은 유불리한 증거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의 자세한 통화 설명과 문자메시지, 과거의 교류와 만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 제1심과 항소심에 제시된 관계인의 증언과 당시 문답의 정확한 의미 역시 사건기록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자료만 선택해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이 이 사건에도 빠짐없이 적용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의 기준이 낮아져서도 안 되지만, 그의 정치적 평가가 분분하다는 이유로 그 기준이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가 이미 검토한 내용을 반복해 달라는 것보다, 실제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바라는 마음과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저의 진심입니다.

9. 맺음말

부디 대법관님들께서 항소심의 서면 판결문과 소송기록, 실제 상고이유서를 토대로 두 공소사실을 각각 엄정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에 관하여는 인정된 소개 관여 행위와 공표된 발언의 의미가 일치하는지, 이남석 변호사의 제1심 증언과 윤대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증언이 법률상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관하여는 연속된 질문과 답변이 일반 선거인에게 전달한 사실의 범위, 그 사실의 객관적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과 당선 목적을 각각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파기·환송 등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하고 일관된 법적 기준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 글은 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구호나 막연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엄격한 형사책임의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는 한 국민의 탄원입니다. 그 간절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6년 월 일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대법원 귀중